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4년 12월 14일

나. 회부일자 : 1994년 12월 14일

3. 제안이유

'94 정기재물조사결과 시.도 공통건의사항인 관용물품의 처분시 활용가능 물품중 감정대상 불품금액의 상향조정과 불품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등 불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기 위함.

4. 주요골자

- 관서당경비로 불품을 매입.수리.제조시 불품매입등의 요구 생략조항 삭제
- 불용품처분시 감정의뢰단가 상향조정
불용품 처분시 감정기관 의뢰대상 물품을 활용 가능물품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“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”에서 “단가 1천만원

이상인 물품”으로 조정

-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축소 ... 소모품 대장 삭제
- 비품의 구분 기준중 취득단가 조정

“내용년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 소모성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과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”을 “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”으로 조정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- 이는 현행물품의 매입, 수리, 제조시 품의요구에 의한 구매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있어 물품관리의 누락현상이 발생되는바 이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며
- 불용품처분시 감정기관 의뢰대상 물품을 활용가능물품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은 참작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의 취득가격단가를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코자 함과
-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항목중 소모품대장의 삭제와 이에따른 일련번호를 조정하고 ②항의 조분중 소모품대장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
- 품종의 구분기준 중 비품의 경우 내용년수가 1년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인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

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성제고와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승인하여 줌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- 1. 충청북도 물품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(안)